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의견표명)

□ 민원 제목 : 하천 보행로 상습 침수 해결 요청

□ 신청 원인

- 신청인은 우천 시 ○○면 △△리 하천 보행로의 배수 기능 미흡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시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음. 그러나 제대로 조치 되지 않아 침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침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함.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하천과, 공원과
 - 해당 보행로는 저지대에 위치해있어 강우 시 빗물이 유입되어 지속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, 침수의 주원인은 우수를 배제하는 집수정 및 우수관로의 토사 퇴적으로 확인됨
 - 옴부즈만 민원 접수 후, 해당 위치의 집수정 및 우수관로를 유지·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측에서 준설 작업을 실시하여 현재는 우수 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, 향후 추이를 점검하여 필요시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측과 협의하여 공원부지 내 배수시설 추가 설치 등을 검토할 계획

□ 사실관계

- 신청인은 2023. 7. 19.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상습 침수지 정비요청을 하였고, 하천과에서는 2024. 4. 15. ■■■천 산책로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2개의 배수구를 설치하였으나 이후에도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아 우천시 침수가 확인됨

- 2025. 6. 24. 읍부즈만 민원 접수 후, 도시정보 확인을 통해 해당 부지가 공원 용도의 지목인 것을 확인하여 공원과의 ■■■천 제방 보행로 관리부서인 하천과에 민원사항 전달 및 추후 대책 사전 논의
- 침수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분석한 결과, 1차적으로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소관인 중앙고속도로 지선 ■■■천교 교량 하부에 위치한 교량 집수정 시설에 토사물이 누적되어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빗물이 넘쳐 인근 보행로로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
- 2025. 7. 8. 한국도로공사 주관하에 교량 집수정 및 배수관 준설 작업을 실시하여 1차적인 배수체계 정비 완료

□ 관계법령 등

- 「한국도로공사법」 제12조(업무)

□ 판단 및 결론

- 판단
 - 추후 우천 시 동일 현상 재발할 경우,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 주관하에 우수관로 추가 등 추가적인 정비 대책에 대해서 하천과, 공원과의 협의 통해 논의 필요
- 결론 : 「의견표명」 ⇨ 피신청인 수용
 - 피신청인[양산시 하천과, 공원과] 측에 추후 해당 부지 내 배수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, [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동일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배수시설 정비를 강화할 것, 추후 동일현상 재발 시 추가적인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시행할 것]을 「의견표명」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제도개선)

□ 민원 제목 :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기준 보안을 위한 제도 개선

□ 신청 원인

- 읍부즈만 위원들은 적극행정 면책 요건의 범위를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및 양산시 읍부즈만의 시정권고·의견표명을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양산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,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

□ 사실관계

- 현행 「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 제5조 제3항은 ‘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·의견표명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’라고 규정하고 있음
- 그러나 실제 행정현장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외에도 양산시 읍부즈만이 주민 고충 해소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시 등의 장에게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하고 있으며, 해당 내용은 「양산시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되어 있음
- 또한 2025. 2. 4. 「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, 도의 시정권고·의견표명에 대비 필요성 제기

□ 관계법령 등

- 「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

□ 판단 및 결론

○ 판단

- 상기 현황 및 사실관계를 통하여,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·의견표명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와 양산시 읍부즈만의 시정권고·의견표명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「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 제5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

○ 결론 : 「제도개선 권고」 ⇨ 피신청인 수용

- 「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 제5조 제3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, [양산시 감사담당관]에게 [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와 양산시 읍부즈만의 시정권고·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를 포함하여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선할 것]을 「제도개선 권고」

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[훈령 제462호(2026.01.22.시행)]	
(현행)	(개선)
제5조(적극행정 면책요건) ①·② (생략) <개정> ③ 국민권익위원회 의 시정권고·의견표명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. <신설>	제5조(적극행정 면책요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6.1.22.> 1. 국민권익위원회 의 시정권고·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2.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의 시정권고·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3. 양산시 읍부즈만 의 시정권고·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